

■ 최신 법령 ■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배성진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1. 주요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2016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약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다양한 확인·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만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는 서명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및 제43조의4항 제2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7항 등).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계약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각 단계별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부담하는 설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제42조의2 제3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제9항, 제10항 등). 즉 보험회사는 기존 설명 대상 사항 외에도 (i)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ii)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손해사정 대상 보험상품인지 여부,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 (iii)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심사현황 결과 문의 및 조회방법,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한,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 가산 등 보험회사의 조치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확인·인증방법에 관한 사항은 개정 즉시 시행되고, 보험회사 설명의무 강화에 관한 사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보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1. 주요 내용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사건이 증가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로 인한 경영악화 및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사기죄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제4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제5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8조). 보험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i)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ii)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제11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다운로드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